삼정 KPMG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November 9, 2026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관련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국제조세 및 관세 관련 주요 이슈와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네덜란드 항소법원, 관계사 신용한도 거래의 인출금 이자·약정수수료 공제 및 문서화 적정성 판단

요약

문제가 된 거래는 관계사가 일정 한도의 자금을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관계사 신용한도(credit facility) 거래입니다. 차주는 신용한도 중 실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사용의 대가로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약정한도를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받는 대가로 별도의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지급하였습니다.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일부 신용한도 거래의 이전가격 문서에서 ① 차주별 신용도 분석이 법인세 신고 시점까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② 비교대상 거래에 적용한 유동성 및 회귀분석 조정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납세자는 인출금 이자와 약정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관계사 신용한도 거래를 보유한 기업은 실제 인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뿐 아니라 약정한도 유지에 대한 약정수수료의 산정 근거와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체결 또는 조건 변경 시점에 차주별 신용도, 명시적 보증과 그룹의 암묵적 지원, 비교대상

선정 및 조정 근거를 문서화하고 법인세 신고 전에 자료의 존재와 완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 개요

본 사안에서 납세자는 관계사와 신용한도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도 중 실제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에는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관계사가 약정한도를 필요 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 가용성을 유지하는 대가로 약정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쟁점은 ① 실제 인출금의 이자율, ② 약정수수료의 부과 근거와 수준, ③ 이자와 약정수수료를 합산한 전체 금융비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④ 이를 뒷받침하는 차주별 신용분석과 비교가능성 조정 자료가 적시에 작성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문서화 미비와 상당한 세액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적정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당성을 입증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납세자가 이자 및 약정수수료 공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고 그 입증수준도 가중되었습니다(reversed and aggravated burden of proof).

주요 사항

1. 차주별 신용도 분석

개별 차주의 재무 및 영업현황뿐 아니라 명시적 보증과 그룹의 암묵적 지원 가능성까지 반영한 신용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2. 비교가능성 조정의 신뢰성

비교대상 거래에 유동성 또는 회귀분석 조정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방법과 기초자료의 신뢰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비교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① 적합한 비교대상의 선정, ② 차이에 대한 조정, ③ 신뢰성 있게 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비교대상의 제외를 제시하였으며, 본 사안에서는 납세자가 적용한 유동성 조정 및 회귀분석 기반 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정상가격 범위의 적용

법원은 정상가격 범위 전체(full arm's-length range)의 상단이 여전히 수용 가능한 정상가격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자동으로 중위값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신뢰성 높은 비교대상이 소수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항상 중위값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신뢰성 높은 단일 비교대상만으로도 정상가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4. 전체 금융비용의 고려

법원은 대부분의 신용공여 거래에 대해 이자와 관련 약정수수료를 함께 고려하는 총비용 접근법(total-cost approach)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와 약정수수료를 별도로만 검토하기보다 전체 금융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의 사후적(ex-post) 접근방식은 결과를 알고 난 뒤에 내리는 판단, 즉 후견지명(hindsight)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적시성 있는 이전가격 문서화

거래 당시 작성된 이전가격 문서는 사후 작성 자료보다 높은 증명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실행 시점부터 분석 근거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법인세 신고 당시 신용분석 자료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입증책임 전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대상은 관계사 신용한도 거래에서 발생한 인출금 이자와 약정수수료입니다. 인출금 이자는 실제 사용한 자금의 대가이고, 약정수수료는 차주가 약정한도를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자가 자금 가용성을 유지하는 대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금리 수준만 정상가격에 부합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약정수수료의 산정 근거, 차주별 신용도와 그룹 지원 효과, 비교대상 및 조정의 신뢰성, 두 비용을 합산한 전체 금융비용, 문서의 작성 시점까지 일관되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관계사와 신용한도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은 계약상 약정수수료의 부과 기준이 전체 약정한도인지 미인출 한도인지, 그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인출금 이자와 약정수수료를 함께 고려한 총비용이 정상가격 범위에 드는지, 차주별 신용분석과 비교가능성 조정 자료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 지급보증 및 자금집중 거래는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거래의 조건과 문서화 근거를 적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실무상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사후에 보완되더라도 거래 당시 또는 신고 당시 작성된 자료보다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거래 체결, 한도·금리·수수료 변경 및 정기 갱신 시점에 분석을 업데이트하고, 법인세 신고 전 계약서, 신용평가, 비교대상 검색 및 조정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내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 예규/심판례: 조심 2026 서 2802 (2026.09.30)

제목: 미국 내 용역 수행 입증 부족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의 당부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법인의 대표이사 및 미국 소재 해외법인의 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해외법인으로부터 2020년 및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수령함.
-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해외법인에 대한 근로 제공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
- 처분청은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법인 주장

- 청구인이 미국 비거주자로서 미국 소재 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따른 보수는 미국에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미국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을 주장함.
- 코로나19로 미국 입국이 제한되어 체류일수가 짧았으나, 이사회 회의 등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처분청이 근로 제공지가 한국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정당하다고 회신받았으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은 부당함.
- 미국에서의 근로 제공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주장에 반박함.

3. 처분청 의견

- 한미조세조약에는 이사 보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법인의 소재지가 아닌 실제 용역수행지를 기준으로 소득원천을 판단해야 함
- 청구인의 근로 제공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미국 원천소득이 아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한미조세조약 및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라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미국 체류일수가 15일에 불과하고, 제출된 자료로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청구인이 인용한 사외이사 보수 관련 예규 역시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해석이므로, 해외법인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수를 미국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국세청 예규 및 OECD 지침에 따라 과세권은 용역이 실제로 수행된 국가에 있음.

- 사후검증은 신고내용을 간이하게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이후 세무조사를 통한 재검증 및 과세가 가능하며, 사후검증 결과를 신뢰한 사정은 2020년 귀속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에 반영하였음.

4. 쟁점

- 국내 거주자가 미국 소재 법인의 이사로서 받은 보수를 국내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한미조세조약상 이사 보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쟁점보수를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실제 용역수행지를 기준으로 소득원천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회의록, 출장품의서, 항공권 발권 내역 및 현지 관리담당자의 확인서 등 제출 자료가 미국에서의 실제 용역 수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과거 사후검증 결과 및 미국 세금의 환급청구 기회 상실이 이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 청구인이 해외법인의 이사로서 수령한 쟁점보수가 한미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제 용역이 수행된 국가를 기준으로 소득원천을 판단해야 함.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체류일수가 매우 짧고, 2021년에는 미국 체류 사실이 없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국 내 근로 제공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함.
- 제출된 해외법인 회의록은 모두 서면의결 자료이고, 주요 회의 관련 결재문서에도 개최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미국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한미조세조약상 이사 보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용역수행지국인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처분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 처분에 위법이 없음. **(기각 결정)**

03 관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요

관세청은 10 월 26 일자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과세자료 제출 완화 및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절차 개선 등 기업의 관세 행정 부담 완화와 실무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세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 완화: 운임·보험료 등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을 건별 500 만 원 초과 건으로 완화하고, 수입항 도착 후 발생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 ACVA 실무 절차 개선: ACVA 연례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1 개월→2 개월)하고, 사전심사 승인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대상(과세가격 분야) 제외 규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행정 절차 명확화: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접수증 신설 및 위원회 명칭 변경('협의회') 등 행정 명확성을 제고했습니다.

** 근거 규정:「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제 4 조(과세자료 일괄제출), 제 24 조(운임 등), 제 56 조(연례보고서), 제 58 조(관세조사와의 관계)*

2. 주요 개정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개선 (제 4 조)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완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 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수입신고 건별 합계 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
	미제출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요구 명확화: 납세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없이도 세관장이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요구를 2 차(30 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 (제 24 조)	관세법 제 30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라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 외에 수입 후 발생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 접수증 신설 (제 43 조)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 접수일 명확화를 위한 접수증(별지 제 39 호서식) 신설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 변경 (제 53 조)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을 '특수관계 사전심사 협의회'로 변경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제 56 조)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허용(1 개월 → 2 개월)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규정 명확화 (제 58 조)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분야 중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제외" 명확화

2) 신·구문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개선 (제 4 조)	<단서 신설>	③다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수입신고 건별 합계금액이 5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⑦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⑦다만,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2 차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 (제 24 조)	7.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가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 등이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 (제 43 조)	<신설>	④ 제 1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서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 39 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은 접수증 교부일로 본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 변경 (제 53 조)	②(중략)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략) 특수관계 사전심사 협의회(이하 "특수관계 협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제 56 조)	②(중략)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 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중략)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2 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규정 명확화 (제 58 조)	③ 관세청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로 인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 년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한하여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통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통보된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사점

관세청의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고,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ACVA)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매년 연초에 대상 기업이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일괄하여 제출해야 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의 제출 대상이 수입신고 건별 합계 500 만 원 초과 건으로 제출 대상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ACVA 연례보고서 제출기한을 1 개월에서 2 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심사 승인 물품은 관세조사(과세가격 분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ACVA 는 과세가격 분야의 조사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수단으로서의 실익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제출 대상의 완화가 제출 의무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8 개 분야에 걸친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연초에 일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입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검증하고,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과세가격 검토 보고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제출 시 납세자의 연장 신청 없이도 세관장이 2 차(30 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만큼 기한 내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027 년 1 월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준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및 운송비용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정 기준에 따른 제출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 두어야 연초에 촉박하게 대응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과세가격 관련 자료의 작성·보관·제출 절차를 상시적인 관세 관리체계에 반영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KPMG 관세법인은 2027 년 1 월 과세자료 일괄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 대상 범위 검토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 취합·검증, 과세가격 검토 보고서 작성, 세관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